

경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



안 산 시

경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

의안 번호	10-1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「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협약 보고하는 사항임
- 안산공업고등학교가 추진하는 「2026년 교육부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」 선정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필요
- 지역 및 국가 기반 산업, 뿌리산업 및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지자체·교육지원청·기업·유관기관·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「경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」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

※ 사후보고 사유 : 사업참여 사전 준비 및 신청기한(2026. 4. 23.)내 협약서 제출

☐ 협약개요

- 협약 체결일 : 2026. 4. 7.
- 협약기간 :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(1년 단위 자동연장)
- 대상기관
 - 안산시, 안산공업고등학교
- 소요예산 : 없음

☐ 주요내용

- 사 업 명 : 2026년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및 선도지구 운영
 - ※ 지원분야 : 지역연계상생형(경기협약형) 특성화고
- 주무부처 : 교육부

- 추진기관 : 안산공업고등학교
- 운영기간 : 3년(※ 매년평가)
- 지원규모 : 연간 100,000천원(교육부→안산공업고등학교)
- 사업내용 :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전인을 위한 재정지원
 - 미래산업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, 기자재구입, 교육연수 등
- 컨소시엄 구성(총 114개 기관)



거버넌스 : 안산시, 안산시의회, 안산교육지원청 유관기관 : 경기테크노파크 외 24개소
 대학교 : 한양대ERICA지능형로봇사업단 외 11개소 기업 : 무선테크윈 외 73개소

- 안산시 역할
 - 지역 수요 기반 생태계 설계 및 정주 여건 조성
 -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행,재정적 지원
- 추진내용
 - 업무협약 체결(안산시-안산공업고등학교) : 2026. 4. 7.
 - 업무협약 체결(안산시의회-안산공업고등학교) : 2026. 4. 13.
 - 업무협약 체결(무선테크윈 외 112개소) : ~ 2026. 4. 23.
 - 2026년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선정 : 2026. 5. 5.
 (지역연계상생형 모델)

☐ 협약서(안) : 【붙임】

☐ 협약 안전 점검표

[붙임]

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서



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서

“안산시”, “안산공업고등학교” (이하 “협약기관” 이라 한다)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인적·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를 통해 안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본 협약에서의 “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”란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,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-교육지원청-대학-기업-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협력 사항) 각 협약기관은 보유한 역량과 여건 범위 내에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.

1. 학교의 미션 및 비전, 산학 융합 교육 계획과, 취업-성장-정주 지원을 통한 학생의 지역인재로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 방향 및 프로그램 기획
2.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협의
3. 사업 운영 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 도출

제4조(협력 범위)

- ① 협약 기관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한다.
- ②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에 따른 협력 사항을 기반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다. 다만, 각 기관은 법적·행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.

제5조(영·재정적 지원) 각 협약 기관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의 예산 및 내부 규정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하며,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.





제6조(비밀 유지)

1. 각 협약기관은 업무 진행 시 관련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며,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.
2. 제1항에 따른 상호 간의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7조(효력 발생 및 변경)

1.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의 효력은 제8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.
2.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 기간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,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.

제9조(책임의 한계) 본 협약은 상호 협력을 위한 기본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을 최소화하며, 본 협약에 따른 협력과 관련하여 금전적 의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 단,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따른다.

제10조(기타사항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호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04월 07일



안 산 시

시장 이 민 근



안산공업고등학교

교장 김 경 수

협약(보고) 안전 점검표

협약명	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구 분	검 토 항 목	점 검 결 과												
개 요	1. 협약 기간 :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(1년단위 자동연장)	(1 년)												
	2. 협약 성격	신 규 ☒ 연 장 ☐												
	3. 공모사업 관련	여 부 ☒ ☐												
	4. 협약 당사자 : 안산시, 안산공업고등학교	1곳 ☒ 2곳 이상 ☐												
	5. 협약안전 의회 제출 시기 (체결일 : 2026. 4. 7.)	체결 전 ☐ 체결 후 ☒ (직후 회기/ 그 외)												
	6. 의회 의결후 효력발생 조건 명시 ※ 보고건 협약 제외	유 무 ☐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
예산 관련	1. 의무부담 내용	유 무 ☐ ☒												
	1-1. 비용추계 (단위: 천원)													
	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합 계</td><td>2026</td><td>2027</td><td>2028</td><td>2029</td></tr><tr><td>금 액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</table>		구 분	합 계	2026	2027	2028	2029	금 액	-	-	-	-	-
	구 분	합 계	2026	2027	2028	2029								
금 액	-	-	-	-	-									
☞ 그 외사항 : 기타 권리포기 등 의무부담일 경우 기재														
	2. 예산부서와 사전협의	유 무 ☐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
행정 관련	1. 기타 관련 법령 저촉 관계	유 무 ☐ ☒												
	2. 행정 절차 -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여부 (예: 중기지방재정계획, 공유재산관리계획 등) ☞ "미이행"의 경우 계획제출	유 무 ☐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
	3. 협약 전/후 관계자 의견 수렴 - 협약 체결 전·후 관련 부서나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여부	유 무 ☐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